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 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8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되,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는 한편,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4년 8월 31일”로, “176.4원”을 “193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라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 중 “2024년 6월 30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탄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2(탄력세율) ①-----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3.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u>2024년 6월 30일까지</u> 는 킬로그램당 <u>176.4원</u> 으로 한다.	나. ----- ----- <u>2024년 8월 31일</u> ----- <u>193원</u> -----.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4.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u>2024년 6월 30일까지</u> 킬로그램당 10.2원	라. ----- <u>2024년 12월 31일</u> ----- -----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5. ----- ----- -----

가.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49원. 다만, <u>2024년 6월 30일</u>까지는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한다.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u>2024년 6월 30일까지</u> 킬로그램당 39.1원 다.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43원. 다만, <u>2024년 6월 30일까지</u>는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한다. 6. (생략) ②·③ (생략)	가. ----- ----- ----- ----- ----- ----- --. ---- <u>2024년 12월 31일</u> ----- -----. 나. ----- ----- ----- <u>2024년 12월 31일</u>----- ----- 다. ----- ----- ----- -- <u>2024년 12월 31일</u>---- -----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1